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30일, 서지영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4.11.19.)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4.11.26.)

: 상정/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2.6.)

: 상정/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2.20.)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5.7.2.)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지영의원)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손실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으로 2025년에는 53개 대학이 1,684억 5,000만원에 이르는 운영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제정안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대학 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하며,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조치, 경영자문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그러한 조치를 위한 특례를 규정함.

지난 20여 년간 폐교된 대학은 총 19개교이고, 2018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그 중 7개교로서 최근 들어 폐교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사학의 재정난이 악화되고, 한계사학 증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지역대학이 폐교될 경우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립대학들의 재정난 문제는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님.

이에 제정안은 현재 재정위기에 놓인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은 김대식 의원,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